

공공예술창작소 운영규정

제정 2017. 7. 04.

개정 2018. 7. 26.

개정 2020. 2.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공예술 창작소(이하 ‘창작소’로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이 성남시로부터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입주’라 함은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맞추어 창작자를 위한 상주형 전용공간에 들어와 창작활동을 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공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일반입주’, 사업운영 상의 필요 및 예술가 교환 등의 협약 등 특정한 목적으로 입주하는 ‘기획입주’로 구분된다.
②‘입주자’라 함은 창작소의 입주를 목적으로 공간 및 시설 사용을 위해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창작소의 운영시간은 각 공간의 특성과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
② 입주자 공간(이하 ‘입주공간’이라 한다)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시설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

제 2 장 입주 신청 및 사용

제5조(입주기간) ①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운영목적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

제6조(입주신청공고) ①‘일반입주’의 입주공고는 입주공간 운영 일정에 따라 정기, 수시 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②‘기획입주’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 기획 내용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7조(입주신청자격) 입주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개인 또는 단체
2. 세부사항은 해당 창작소 입주신청 공고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제8조(입주신청서류)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공고 내 소정양식)
2. 경력 및 활동내역서 등 기타 공고에서 요청하는 제 서류

제9조(입주자 선정 및 지원) ① 입주자는 재단 또는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② 입주심사는 재단에서 수립한 입주자 선정 세부 심사기준에 따르며, 심사위원회의 결로 선정한다.

③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입주자 지원은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

제10조(입주절차) ①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자는 입주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계약서 체결 등 재단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② 입주계약서는 <별지 제1호> 표준 서식으로 하되,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첨가하는 등 입주계약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무) ① 입주자는 입주공간을 매월 최소 10일 이상(월 80시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고 및 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에 <별지 제3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25.>

② 재단이 시설 관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공간 개방) 입주자는 해당 창작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 등에게 창작소 소개 및 홍보를 위하여 입주공간의 개방이 필요할 시 적극 협조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해당 창작소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에 재단은 경고 할 수 있다.

1. 입주자는 제11조 이용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재단은 입주자에게 경고 할 수 있다.
2. 입주자는 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및 자료 제출, 입주공간 개방, 교육 프로그램 강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타인에게 입주공간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입주자를 포함한 외부인들로 구성된 공동 프로젝트 등 추진으로 부득이 입주공간을 이용할 경우, 외부인 성명, 이용기간, 이용목적 등에 대해 재단에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4. 입주자는 재단이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난방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입주자는 해당 창작소 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입주자는 해당 창작소 내에서 음주, 애완동물 사육 등 공동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 재단은 제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입주공간을 개방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열기의 사용여부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8. 입주자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9. 입주자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퇴실 및 원상보존)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입주자가 입주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제13조 미이행으로 경고누적 4회 이상이 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 중 창작소를 포함한 국내외 타 창작공간에 입주해서는 아니되며, 입주시 창작소 입주자격이 상실되므로 퇴실하여야 한다. (단, 재단과의 협약 등으로 인한 레지던시 교환프로그램 참여시에는 제외)

④ 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입주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단의 승인 없이 퇴실할 경우 향후 3년간 창작소 입주지원을 제한 한다.

⑥ 모든 입주자는 퇴실 시 원상보존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보 칙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8.7.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대표이사 방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예술창작소 입주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의 스튜디오에 입주하는 입주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튜디오 사용)

- ① 스튜디오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입주자는 매월 최소 10일 이상(월 80시간이상) 스튜디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고 및 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에 <별지 제3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입주자는 사고 및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전에 재단에 그 사실을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자 의무)

- ① 입주자는 스튜디오 입주 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작업실 개방, 운영회의 등을 위한 참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는 매월 최소 10일 이상(월 80시간이상) 스튜디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주기간 동안 국내외 타 창작공간에 입주할 수 없다.
(단, 재단과의 협약 등으로 인한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 참여시에는 예외)
- ③ 입주자는 재단에서 스튜디오 시설관리를 위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는 사용하고 있는 스튜디오 작업실 내부에 화재 등 위험 물질을 반입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는 월별 활동보고서 및 이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반입물품의 제한)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개인 작업 시에 반입할 수 없다.

1. 창작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 외의 사치성 가구 집기
2. 폭발성 · 인화성 물질

3. 악취 및 소음을 발생하는 물품
4. 혐오성 물품
5.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물품
6. 과도한 전력소비를 요하는 장비
7. 기타 재단에서 제한하는 반입물품

제5조(행위의 제한)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2. 스튜디오 내에서 과도한 음주, 가무, 도박 등을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소음 등 주변에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5. 개인 스튜디오 이외의 장소(공용 공간 포함)에 작품 또는 재료 등을 방치하는 행위
6. 기타 시설의 공동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제6조(공공예술프로젝트 지원금) 입주자는 제2조 2항 및 제3조 2항의 매월 최소 10일 이상(월 80시간이상) 스튜디오 사용의무와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산 완료한다.

제7조(지정 외 공간 사용) 입주자가 작품 활동을 목적으로 작업실 이외의 공간(공용 공간, 야외 공간 등) 사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스튜디오 개방) 국내 및 국외 또는 재단의 운영자 등의 불시 방문으로 스튜디오와 입주자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개인 스튜디오 개방이 필요한 경우 재단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스튜디오를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해당 입주자에게 스튜디오의 개방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재단은 제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입주자 부재 시 개인 작업실을 개방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열기의 사용여부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원상보존)

① 입주자는 스튜디오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원상보존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해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작업성격상 스튜디오 구조물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퇴실 시 작가의 책임하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규칙준수 의무) 입주자는 본 입주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부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스튜디오에서 중도 퇴실하여야 한다.

단체명

대표

서명